

第100回(臨時會) **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** 第1號(附錄)
市民行政委員會會議錄

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

目 次

1. 서울特別市鐘路區統·班設置條例中改正條例(案) 1面
 2. 서울特別市鐘路區住民監査請求에 관한條例(案) 3面

1. 서울특별시종로구통·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732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0. 5. .
 제 출 자 : 종로구청장

1. 개정이유

- 동기능 전환에 대비하여 일선행정 보조자인 통·반장을 통해 각종 고지서를 직접 송달하도록 하여 정확한 고지서 송달과 송달비용 절감 및 세수 확보를 위해 서울특별시종로구통·반설치조례의 통·반장 임무조항에 고지서 송달 항목을 신설하고자 함

2. 주요골자

- 고지서 송달에 따른 보상금 지급은 협약에 의하도록 단서 신설(안 제7조제1항)
- 통·반장 임무 중 각종 지방세, 과태료, 부담금, 고지서 송달에 관한 사항을 신설(안 제7조제1항 제10호)

3. 개정근거

- 동기능 전환에 따른 고지서 송달방법 개선(2000.3.22구청장방침)

4. 예산수반사항 : 없음

5. 개정(안) 및 신·구조문 대비표 : 따로붙임

2.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(안)

의안 번호	731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0. 5.

제 출 자 : 종로구청장

1. 제정이유

-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주민감사청구제 신설에 따라('99.8.31) 우리 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감사청구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(안 제2조)
 - 종로구와 종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 연서 주민의 수를 20세 이상 700인으로 함
- 시행규칙(안 제3조)
 -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함

3. 제정근거

- 지방자치법 제13조의4(주민의 감사청구)
-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따른 준비 철저(서울시 민조13400-291, 2000.3.3)

4. 예산수반사항 : 필요없음

5. 조례(안) : 따로 붙임

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(안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) 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종로구와 종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 연서 주민수는 20세 이상 500인 이상으로 한다.

제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